

<b>보도 일시</b> (인터넷) 2022. 8. 16.(화) 12:00 (지 면) 2022. 8. 17.(수) 조간	<b>배포 일시</b> 2022. 8. 16.(화) 08:30				
<b>담당 부서</b>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table border="1"> <tr> <td><b>책임자</b></td> <td>과 장 노진영 (044-203-6285)</td> </tr> <tr> <td><b>담당자</b></td> <td>사무관 황규태 (044-203-6290)</td> </tr> </table>	<b>책임자</b>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b>담당자</b>	사무관 황규태 (044-203-6290)
<b>책임자</b>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b>담당자</b>	사무관 황규태 (044-203-6290)				

##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 주요 내용

- 기간 : 8월 17일(수) ~ 9월 15일(목)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수) 9시부터 9월 15일(목) 18시까지 받는다.
-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I·II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 \* (I 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II 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신청 마감일(9월 15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단위 : 만 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2년	I 유형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학 선택적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 구간을 확정하여 10월 5일(수)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금)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1599-2000	월~금 09:00~18:00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강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충북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		

※ 국가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참고

- 【붙임】 1. 2022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선발 개요  
2. 학자금 지원구간 개요

□ 2022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선발 주요 내용

내용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 개요	대학생의 고등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단, 2022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II 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I·II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8.17.(수)~9.15.(화)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8.17.(수)~9.23.(금)		

□ **학자금 지원구간 정의**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

□ **개인별 소득인정액 도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인정액은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의 소득에 한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4.17%/3 + [금융재산 - (잔여공제액 + 잔여부채)] × 월6.26%/3 + [차량가액 × 월4.17%/3]
- **소득공제** : 본인(소득공제 130만원과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중 큰 값) 가구원(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 **재산공제** :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공제 적용, 자동차는 공제대상 아님
  - ※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지원구간 경계값 설정**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여 지원구간 경계값 설정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단위 :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지원구간 경계값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
1구간	0% ~ 30%이하	~ 1,536,324
2구간	30%초과 ~ 50%이하	~ 2,560,540
3구간	50%초과 ~ 70%이하	~ 3,584,756
4구간	70%초과 ~ 90%이하	~ 4,608,972
5구간	90%초과 ~ 100%이하	~ 5,121,080
6구간	100%초과 ~ 130%이하	~ 6,657,404
7구간	130%초과 ~ 150%이하	~ 7,681,620
8구간	150%초과 ~ 200%이하	~ 10,242,160
9구간	200%초과 ~ 300%이하	~ 15,363,240
10구간	300%초과	15,363,240 ~